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방청장의 화재유형별 대응 매뉴얼 작성 근거 명시〉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00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6.
3. 회 부 일 : 2024. 8.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리튬배터리 공장에서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금속 화재의 경우 불이 크게 번지면 불을 진화하기 어려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금속 화재 유형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화재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소방청장은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재유형에 따라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소방청장의 화재유형별 대응 매뉴얼 작성 근거 명시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화재유형에 따른 대응매뉴얼을 작성하는 근거를 이 법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6조의2(화재유형별 대응 매뉴얼 작성 등) ① 소방청장은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재유형에 따라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유형 분류, 매뉴얼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소방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1)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음.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개정 2013.8.6.>) ① 재난현장에서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다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개정 2023.1.17.>

1.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구조
2.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요원·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의 배치와 운용
3.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는 지휘통제절차를 비롯해서 화재유형별, 사고유형별, 구급 단계별, 상황 단계별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방침을 기

4.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5.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6. 긴급구조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7. 현장접근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9조(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① 법 제52조에 따른 현장지휘(연락관을 파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준현장지휘체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친 재난
2.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여러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재난

② 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긴급구조활동이 끝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통제단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9조(표준현장지휘체계 등) ②영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준현장지휘체계”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체계적인 현장대응과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지휘조직도, 표준용어 및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를 말한다.

제10조(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는 소방청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1. 지휘통제절차: 표준작전절차(SOP) 100부터 1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2. 화재유형별 표준작전절차: 표준작전절차(SOP) 200부터 2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3. 사고유형별 표준작전절차: 표준작전절차(SOP) 300부터 3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4. 구급단계별 표준작전절차: 표준작전절차(SOP) 400부터 4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5. 상황단계별 표준작전절차: 표준작전절차(SOP) 500부터 5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6. 현장 안전관리 표준지침: 표준지침(SSG) 1부터 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를 사용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술하고 있는데,

화재유형별 표준작전절차는 ① 화재시 인명구조 절차, 대원고립상황 대응절차와 같은 화재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표준작전절차, ② 소방호수 연장 절차, 굴절차·고가사다리차 활용절차와 같은 소방장비 사용 절차, ③ 아파트 화재 대응절차, 주택화재 대응절차, 지하철화재 대응절차, 전통시장 화재 대응절차 등 각 소방대상물에 따른 표준작전절차가 기술되어 있음.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주요 목차2)>

- | |
|-------------------|
| I. 지휘통제절차 |
| II. 화재유형별 표준작전절차 |
| III. 사고유형별 표준작전절차 |
| IV. 구급 단계별 표준작전절차 |
| V. 상황 단계별 표준작전절차 |
| VI. 현장 안전관리 표준지침 |

2)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상세 목차는 [참고] 참조

개정안은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와 같은 금속화재에 대한 표준작전절차를 마련하고자 소방청장에게 화재유형에 따라 대응매뉴얼을 작성·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소방기본법」에 마련하려는 것임.

최근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는데³⁾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화재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변화하는 화재유형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화재 등 재난에 관한 우리나라의 대응 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고⁴⁾,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청 외에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이 필요하기에 이를 위하여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긴급구조통제단장 신분으로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한다는 점⁵⁾을 고려하며, 금속화재에 대응

3)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개요(자료: 소방청)

- 일시: '24. 6. 24.(월) 10:31 ~ 25.(화) 08:48
- 장소: ㈜아리셀 공장(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단12길 33)
- 피해현황
 - (인명피해) 총 31명(사망 23, 중상 2, 경상 6)
 - (재산피해) 816,909천원(부동산 457,634 / 동산 341,275)
- 발화지점: 제3동 2층 작업장 화물용 E/V 앞 적재 트레이 내 배터리
- 발화원인: 리튬배터리 폭열·폭발(열폭주) 추정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①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하기 위한 매뉴얼은 현행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그 내용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는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입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소방청은 화재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포함한 재난현장 대응 매뉴얼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를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현행대로 재난안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재난현장 대응 매뉴얼을 작성·활용하는 것이 재난현장 대응 매뉴얼 체계의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51

시·도의 소방본부에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시·군·구의 소방서에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② 시·도긴급구조통제단과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에는 각각 단장 1명을 두되,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서장이 된다.

③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자료: 소방청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I 지휘통제절차

✧ SOP 100	현장지휘절차	3
✧ SOP 101	현장지휘소(통제단) 설치·운영기준	7
✧ SOP 102	지휘 이양절차	9
✧ SOP 103	지휘활동기준 및 통합지휘절차	11
✧ SOP 104	위험구역 진입절차 및 대원 긴급탈출절차	13
✧ SOP 105	항공지휘·통제절차	14
✧ SOP 106	상황판단회의 운영절차	18
✧ SOP 107	재난현장 브리핑절차	19
✧ SOP 108	출동대 복귀절차	21

II 화재유형별 표준작전절차

✧ SOP 200	화재대응 공통 표준작전절차	25
✧ SOP 201	화재대응 안전관리 표준작전절차	28
✧ SOP 202	화재대응 일반절차	30
✧ SOP 203	인명구조 작전절차	33
✧ SOP 204	대원고립상황 대응절차	34
✧ SOP 205	낙하물·붕괴 위험 대응절차	36
✧ SOP 206	방수입무 수행절차	37
✧ SOP 207	방수포 및 사다리 활용절차	38
✧ SOP 208	소방호스 연장 표준작전절차	39

※ SOP 209	굴절차 및 고가사다리차 활용절차	40
※ SOP 210	특수현상 징후 및 대응절차	41
※ SOP 211	헬기동원 화재진압 대응절차	47
※ SOP 212	일반 건축물화재 대응절차	48
※ SOP 213	아파트화재 대응절차	49
※ SOP 214	주택화재 대응절차	50
※ SOP 215	지하철화재 대응절차	51
※ SOP 216	지하가화재 대응절차	52
※ SOP 217	지하층화재 대응절차	53
※ SOP 218	지하공동구화재 대응절차	54
※ SOP 219	도로터널화재 대응절차	55
※ SOP 220	지하 압기공사장화재 대응절차	56
※ SOP 221	금속화재 대응절차	57
※ SOP 222	고층건물 화재 대응절차	58
※ SOP 223	초고층건물 화재 대응절차	59
※ SOP 224	산림화재 대응절차	61
※ SOP 225	차량화재 대응절차	62
※ SOP 226	궁현 트러스 구조물 화재 대응절차	64
※ SOP 227	선박화재 대응절차	65
※ SOP 228	목조문화재 화재 대응절차	68
※ SOP 229	석유화학단지 화재 대응절차	69
※ SOP 230	화력발전소 화재 대응절차	71
※ SOP 231	원자력발전소 화재 대응절차	72
※ SOP 232	가연성 외장재 필로티건물 화재 대응절차	73
※ SOP 233	전통시장 화재 대응절차	75
※ SOP 234	항공기 화재 대응절차	76
※ SOP 235	소방시설 활용절차방법	78
※ SOP 236	석유 등 위험물 저장시설 화재 대응절차	86
※ SOP 237	가스저장시설 화재 대응절차	87
※ SOP 238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대응절차	89
※ SOP 239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절차	91

III 사고유형별 표준작전절차

※ SOP 300	구조 공통 표준작전절차	95
※ SOP 301	구조 안전관리 표준작전절차	98
※ SOP 302	전기사고 대응절차	100
※ SOP 303	기계사고 대응절차	102
※ SOP 304	승강기사고 대응절차	103
※ SOP 305	맨홀사고 대응절차	104
※ SOP 306	건축물 붕괴사고 대응절차	106
※ SOP 307	차량사고 대응절차	108
※ SOP 308	친환경차량 사고 대응절차	109
※ SOP 309	철도사고 대응절차	112
※ SOP 310	유해화학물질사고 대응절차	113
※ SOP 311	방사능 누출사고 대응절차	115
※ SOP 312	폭발물사고 대응절차	117
※ SOP 313	수난사고 대응절차	119
※ SOP 314	산악사고 대응절차	124
※ SOP 315	매몰사고 대응절차	126
※ SOP 316	고소작업 사고 대응절차	128
※ SOP 317	크레인 사고 대응절차	129
※ SOP 318	교량 다중교통사고 대응절차	130
※ SOP 319	의료시설 사고 대응절차	131
※ SOP 320	생활안전활동 안전관리 표준작전절차	132
※ SOP 321	벌집제거, 동물 포획 대응절차	134
※ SOP 322	위험시설물 안전조치 대응절차	137
※ SOP 323	생활민원처리절차(문개방, 급 배수 지원 등) 대응절차	138
※ SOP 324	지하공간 침수사고 대응절차	140

V 구급 단계별 표준작전절차

※ SOP 400	구급 공통 표준작전절차	145
※ SOP 401	구급 안전관리 표준작전절차	149
※ SOP 402	다수 사상자 대응절차	151
※ SOP 403	범죄 관련 현장 대응절차	153
※ SOP 404	명백한 사망 환자 대응절차	154
※ SOP 405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 대응절차	156
※ SOP 406	주취자 대응절차	158
※ SOP 407	정신질환자 대응절차	159
※ SOP 408	노숙자 대응절차	160
※ SOP 409	법적분쟁 또는 민원발생 예방 대응절차	161
※ SOP 410	감염병(의심) 환자 대응절차	162

V 상황 단계별 표준작전절차

※ SOP 500	상황관리 공통 표준작전절차	167
※ SOP 501	상황관리 단계별 표준작전절차	170
※ SOP 502	위치정보 상황관리 표준작전절차	173
※ SOP 503	신고통합 공동대응 및 생활안전신고 처리절차	175
※ SOP 504	상황보고 절차	187

VI 현장 안전관리 표준지침

※ SSG 1	현장 안전관리 공통 표준지침	193
※ SSG 2	임무별 안전관리 표준지침	195
※ 2.1	현장지휘관	195
※ 2.2	현장안전점검관 및 현장안전담당	196
※ 2.3	현장활동대원	196
※ SSG 3	상황별 안전관리 표준지침	197
※ 3.1	화재현장	197
※ 3.2	구조현장	199
※ 3.3	구급현장	207
※ SSG 4	구조 구급대원 감염관리 표준지침	208
※ SSG 5	소방차량 안전운행 표준지침	214
※ SSG 6	현장 소방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안전관리 표준지침	217
※ SSG 7	소방현장 심리적 응급처치 표준지침	220